



의안번호	제 2012 - 7호
의 결 연 월 일	2012. 3. 5. (제40차 회의)

보  
고  
안  
건

## 전문위원 업무보고

제 출 자	수석전문위원
-------	--------





# 목 차

- I. 제50차 전체회의 ..... 1
  - 1. 일시·장소 ..... 1
  - 2. 참석자 ..... 1
  - 3. 주요 안건 ..... 1
  - 4. 회의 요지 ..... 1
    - 가.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의 형량범위 ..... 1
    - 나.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형량범위 ..... 3
  
- II. 향후 일정 ..... 5





# I. 제50차 전체회의

## 1. 일시·장소

- 일시 : 2012. 2. 20.(월) 16:00 ~ 18:00
- 장소 : 대법원 1601호 회의실

## 2. 참석자(15명)

- 수석전문위원, 강우예, 김혜정, 범현, 심재철, 안효질, 이수정, 이정훈, 이주원, 이진국, 정준화, 조석영, 최진녕, 홍준호 전문위원
- 운영지원단장(간사)

## 3. 주요 안건

- 지식재산권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범위 재검토

## 4. 회의 요지

### 가.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의 형량범위

-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

#### (1) 제1안(다수 의견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국내침해	- 10월	6월 - 1년6월	1년 - 2년
2	국외침해	10월 - 1년6월	1년 - 3년	2년 - 4년

### [논거]

- ▷ 국외침해의 법정형을 국내침해의 법정형의 2배로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

를 존중하여 기본영역과 가중영역 형량범위 하한을 국내침해보다 2배로 가중함이 타당

- ▷ ‘피해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’나 ‘국가·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침해’의 경우 영업비밀침해 유형에서는 가중영역에 해당되나,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서는 피해나 결과의 중대성이 이미 유형분류에 반영되어 있어 기본영역(2년~4년)에 해당하므로, 국외침해의 가중영역 형량범위는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의 가중영역이 아닌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를 참조함이 합리적임
- ▷ 대부분의 국외침해는 계획적·조직적 범죄이므로 사실상 가중영역이 기본영역으로서 기능할 것이고, 여기에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라면 가중영역 형량범위 상한의 1/2까지 상향조정 되어 형량범위가 2년~6년이 되므로 매우 중대한 국외침해범죄의 양형까지 충분히 포섭할 수 있음

## (2) 제2안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국내침해	- 10월	6월 - 1년6월	1년 - 2년
2	국외침해	10월 - 1년6월	1년 - 3년	2년 - 5년

## [논거]

- ▷ 국외침해의 경우 실제 사안이 많지 않은데, 행위태양의 다양성 또는 피해의 대규모성을 감안하여 해당 재판부에 양형재량을 주어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가중영역 형량범위 상한을 5년으로 상향함이 바람직함
- ▷ 무체물의 가치가 유체물의 가치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비례하여 무체물에 대한 침해행위인 국외침해의 형량범위 상한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보다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음

### (3) 제3안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국내침해	- 10월	6월 - 1년6월	1년 - 2년
2	국외침해	10월 - 1년6월	2년 - 4년	3년 - 5년

#### [논거]

- ▷ 국외침해의 경우 기업 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중영역은 물론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도 높일 필요가 있음

#### 나.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형량범위

-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

#### (1) 제1안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부정경쟁행위	- 10월	6월 - 1년6월	1년 - 2년

#### [논거]

- ▷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를 대상으로,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침해행위의 본질은 유사하므로 권리침해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의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함이 타당
- ▷ 권리침해행위와 구성요건이 비슷하고, 실무상 부정경쟁방지법위반행위가 상표법위반행위보다 죄질이 더 나쁜 경우도 있으므로 법정형이 낮은 부정경쟁행위의 형량범위를 권리침해행위의 형량범위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
- ※ 제1안을 취하면서, 법정형의 차이를 반영해서 권리침해행위의 가중영역 형량범위 상한을 조금 상향하자는 별개 의견 있음

(2) 제2안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부정경쟁행위	- 8월	6월 - 1년	10월 - 2년

[논거]

- ▷ 제1안에 따를 경우, 권리침해행위, 영업비밀침해행위, 부정경쟁행위의 형량범위가 동일하게 되는데, 위 3가지 대유형 해당 범죄들 사이에 죄질 또는 비난가능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형량범위를 차별화함이 타당
- ▷ 권리침해행위의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인데 반하여, 부정경쟁행위의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, 위 두 범죄유형의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합리함

(3) 제3안 : 원안 형량범위 유지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부정경쟁행위	- 6월	4월 - 1년	6월 - 1년6월

[논거]

- ▷ 부정경쟁행위의 법정형이 권리침해행위의 법정형보다 낮음에도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
- ▷ 학계에서 지식재산권범죄의 법정형이나 양형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나 비판은 별로 없고,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각목 범죄들은 민사적 해결이 바람직함에도 형사책임까지 지우고 있어 입법론적으로 문제가 있음

**[참고]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초안 원안의 형량기준표**

가. 권리침해행위 유형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권리침해행위	- 10월	6월 - 1년6월	1년 - 2년

나.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국내침해	- 10월	6월 - 1년6월	1년 - 2년
2	국외침해	6월 - 1년6월	1년 - 2년	1년6월 - 3년

다. 부정경쟁행위 유형

구분	감경	기본	가중
부정경쟁행위	- 6월	4월 - 1년	6월 - 1년6월

**II. 향후 일정**

- 전문위원 제51차 전체회의는 양형위원회 제40차 회의결과를 보고 개최하기로 함